#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10288

제안연월일 : 2025. 4.

제 안 자: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	발의일	심사경과
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	2202013	황명선의원	2024.7.19	-제418회 국회(정기회) ·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(2024.9.26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·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(2024.11.26.) 상정 -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(2024.12.26.) 상정 -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(2025.2.17.) 상정 -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(2025.4.8.) 상정, 축조심사 및 의결(대안반영폐기)
	2202715	권향엽의원	2024.8.12	-제418회 국회(정기회) ·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(2024.11.20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·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(2024.11.26.) 상정 -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(2024.12.26.) 상정 -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	발의일	심사경과
				자원특허소위(2025. 2. 17.) 상정 -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(2025.4.8.) 상정, 축조심사 및 의결(대안반영폐기)
	2204387	박성민의원	2024.9.27	-제418회 국회(정기회) ·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(2024.11.20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·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(2024.11.26.) 상정 -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(2024.12.26.) 상정 -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(2025.2.17.) 상정 -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(2025.4.8.) 상정, 축조심사및 의결(대안반영폐기)

- 가. 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(2025.4.8.) 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.
- 나. 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5. 4.9.)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 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·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,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,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임.

#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(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1항 단서를 "다만,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및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다.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충전방법"을 "충전방법 및 충전설비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직접충전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29조(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 제29조(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 가스 충전행위의 제한) ① 액 가스 충전행위의 제한) ① ---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 를 충전 받아야 하며,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다만,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경우 및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니하다. 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다.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액화석 -----충전방법 및 충전설비-유가스의 충전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.